

# 등산강사 자격 및 등산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제 정 : 2009. 9. 4

개 정 : 2013. 10. 21

개 정 : 2013. 12. 17

## 제 1 장 총 칙

**제1조(근거)**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함) 등산교육원 규정 제3조 1항(전국 등산학교 전문 강사 양성)과 제11조 2항(등산교수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연맹 등산교육원(이하 “등산교육원”이라 함)의 등산강사 자격과 등산교수 임용 제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규정의 적용)** 이 규정의 내용이 국가법령이나 상위 기관의 규정과 상충이 있을 때는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적용한다.

**제4조(자격의 종류)** 연맹회장과 등산교육원장이 임명하는 등산강사와 등산교수 자격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등산강사 (1급, 2급)
- ② 등산전임강사
- ③ 등산교수
- ④ 특임교수

## 제 2 장 등산강사

**제5조(용어의 정의)** 등산강사는 등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하여 등산강사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6조(응시 자격)** 1, 2급 등산강사는 5년 이상의 암벽등반과 빙벽등반 경력을 지닌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연맹회장 또는 전국 시도연맹회장, 연맹 각종위원회 위원장, 유관단체(한국산악회, 한국대학산악연맹)장, 등산교육원장이 인정한 등산교육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응시할 수 있다.

**제7조(응시 제한)** ①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등산강사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참가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응시취소 처리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연수교육 및 검정)** 등산강사의 연수교육과 검정은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연수과목과 교육내용, 검정방법 및 검정기준은 연수교육 전에 실시하는 등산교육원 운영회의나 교수회의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고 시행 2개월 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제9조(평가위원)** ①평가위원은 연수교육 참가자의 능력평가 및 합격여부를 최종심의 한다.  
 ②평가위원은 등산교육원 규정 제10조(구성)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원과 등산교육원 등산교수, 등산교육원장이 추천한 권위 있는 산악인으로 구성한다. 단, 야외에서의 실기지도능력 평가에는 등산전임강사 및 등산강사도 참가하여 평가위원을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2급 등산강사 자격심사)** ① 하계연수와 동계연수의 합격기준을 통과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계연수와 동계연수를 모두 합격하여야 2급 등산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②두 과정 중 한 과정에 먼저 합격하고 나머지 한 과정을 연속3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합격한 과정도 무효로 한다.  
 ③필기시험만 불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필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며 재시험 일자는 다음번 연수일정의 필기시험 일로 한다.

**제11조(합격통보)** ①연수교육을 마친 후 등산교육원장은 4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합격한 참가자 명단을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등산교육원은 등산강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연맹 명의의 등산강사자격증을 발급하며 소정의 수수료는 강사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2급 등산강사 유효기간 및 자격유지)** ①2급 등산강사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연맹 홈페이지에 공지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②2급 등산강사는 자격취득 후 유효기간만료 전에 3회 이상 등산교육원 세미나에 참석하여야 새로이 유효기간 5년의 2급 등산강사자격이 계속 유지되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2급 등산강사는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새로운 유효기간의 2급 등산강사자격증은 본인이 신청하여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 제 3 장 등산전임강사와 등산교수

**제13조(용어의 정의)** ①등산전임강사(이하 “전임강사”라 함)는 등산교육 교과별 등산교수가 되기 위하여 해당교과의 등산교수로부터 능력과 자질을 연수중인 자를 말한다.  
 ②등산교수는 등산교육 교과별로 우수한 교육전문성을 지닌 자로 등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임용과정을 거쳐 임용된 자를 말한다.  
 ③교과라 함은 등산교육을 위해 구분한 교육과목을 말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한다.

1. 다른 학문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등산분야의 고유한 전문성을 지닌 기술이나 학문
2. 다른 분야의 학문이나 기술이지만 필요성에 의하여 등산의 전문성이 추가된 기술이나 학문

**제14조(교과별 정원)** ①교과의 선정과 교과별 등산교수와 전임강사의 정원은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 의에서 정한다.

②교과별 등산교수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등산교육원장이 선임교수를 임명 할 수 있다.

**제15조(자격)** 등산교수 및 전임강사 신규임용 지원자는 만30세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중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등산관련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등산 또는 등산교육 분야에 10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

②등산교육원으로부터 등산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동등한 수준의 경력 소유자

③등산관련단체의 장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회장 또는 전국 시도연맹회장
2. 사단법인 한국산악회장
3. 사단법인 한국대학산악연맹회장
4. 등산교육원장 또는 등산교육원장이 인정하는 등산교육단체장

**제16조(임용절차)** 등산교수와 전임강사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등산교육원장이 임용한다.

①신규임용의 절차

1. 등산교수와 전임강사의 신규임용이 필요할 때는 공고를 통해 교과별로 임용 지원자를 모집한다.

2. 임용지원자는 해당교과의 강의교안과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시범강의 발표를 평가받는다.

3. 임용심사는 해당교과의 전문성과 등반활동, 강의, 저술, 등산교육원 사업참여도 등을 평가한다.

②재임용의 절차

1. 등산교수와 전임강사의 임기만료시 재임용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한 기간 내에 재임용 지원서를 등산교육원에 제출 하여야한다.

2. 재임용 지원자는 교수평가위원회에서 그간의 등산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 및 기여도, 교육기술세미나 발표실적, 등산관련 집필 및 강의 등의 활동실적을 평가받고 최종심의를 통과하여야한다.

③신규임용과 재임용 심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수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전임강사의 신규, 재임용 시에는 해당교과 등산교수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

**제17조(교수평가위원회)** ①본 규정 제15조(임용절차)에 따른 등산교수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수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교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등산교수 신규임용 지원자와 재임용 지원자의 능력평가 및 전반적인 심의를 담당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등산교육원장이 맡거나 산악계의 권위 있는 자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등산교육원장 또는 부원장 중 1인
2. 연맹 교육기술위원장 1인
3. 교수부장 1인
4.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등산교육 및 산악계의 권위자 5인 이내

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및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 등산교육원에 보관한다.

⑦교수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임용지원자에 대하여는 교수평가위원회에서 등산교수 임용여부를 심의한다.

**제18조(의무)** ①등산교수와 전임강사는 등산교육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등산교수는 등산교육 분야에 관한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서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연구 노력 하여야하며 전임강사는 등산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보좌한다.

③등산교수와 전임강사는 담당하는 교과 외에 등산의 기초기술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④각 교과의 선임교수는 해당교과의 등산교수진과 전임강사진을 이끌며 해당교과의 학문적 연구과 교육기술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등산교육원은 그 활동의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⑤등산교수는 임기 중 1회 이상 자체 연수세미나에 참석하여 등산 전반에 관련한 기술과 이론, 자료 등에 대한 연구 또는 정리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등산관련 연구논문을 등산교육원에 제출함으로써 연구발표를 대신할 수도 있다.

**제19조(임기)** 등산교수와 전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16조 ②항의 재임용 절차를 거쳐 계속 재임용될 수 있다.

## 제 4 장 특임교수

**제20조(용어의 정의)** 특임교수라 함은 등산교육원장이 등산교육원의 운영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규정의 임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21조(임기)** 특임교수의 임기는 임용을 결정한 등산교육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제22조(지위)** 특임교수의 지위는 등산교수와 동등하며 동일한 자격과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 제 5 장 징계

**제23조(자격의 상실 및 해임)** 등산강사, 등산전임강사, 등산교수, 특임교수는 다음의 경우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자격유효기간 또는 임기 중이라도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임 또는 일시정지 될 수 있다.

①연맹정관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②등산교육원의 사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경우

③등산 교육자로서 능력이나 자질 또는 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부적절한 언행으로 연맹 및 등산교육원 또는 산악인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

제24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등산교육원 운영회의 승인을 거쳐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전임강사의 임기는 2010년도 교수평가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평가 및 심의가 있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등산교육원 운영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전임강사의 임기는 2014년도 교수평가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평가 및 심의가 있기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등산교육원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연맹회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등산교수와 등산교육원장이 임명한 특임교수, 전임강사의 임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